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중 "55명"을 "5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